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1 | 2025.09.15 (2025.09.15.~2025.09.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상법」 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의원 등 15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9인)」**,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 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정리하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산자위>, <복지위>, <국토위> 등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노동안전 종합대책」발표(고용노동부) 7
-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개최(국무조정실)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해양수산부)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청)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17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22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2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23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24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	2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	25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의원 등 15인)	26
• 식량안보법안(서삼석의원 등 25인)	2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7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9인)	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8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9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3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3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3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3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북기왕의원·권영진의원 등 20인)	34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3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34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러시아] 러시아 북극항로 규제 동향과 한국 기업의 진출 시사점
- [소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 [중국]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9. 3. - 2025. 9. 1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발표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안전 실천/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2025-09-15
-------	--	------------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힘

①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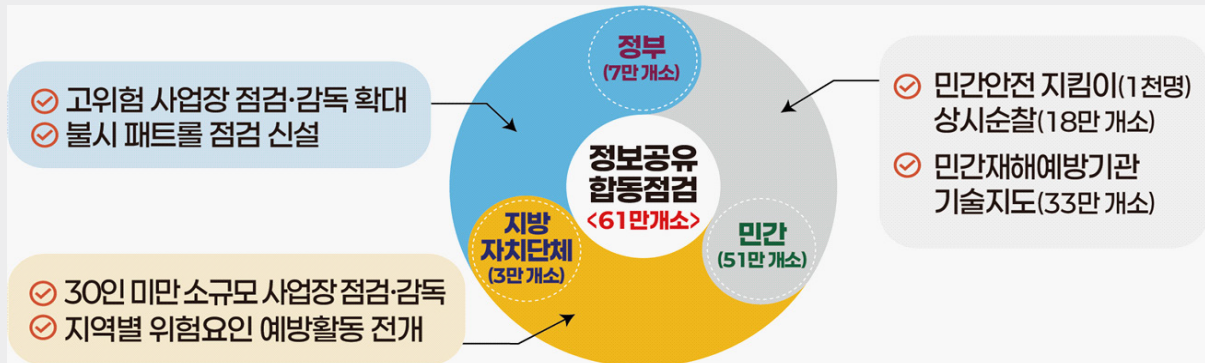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재정	인력	기술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지원	중상해재해 재발방지 컨설팅 신설 및 사후지원 연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제공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원('26년(안), +4,733억원)			

②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직무훈련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 강화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200명)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 지원(무상정비 등) 유상운송보험가입 및 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 ·직종별 안전보건가이드 개발 및 안전 교육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④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 마련 (예시: 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 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③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

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

③ 안전 의식·문화 확산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8.29~)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26년안 111억원 신설). 또한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④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①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함.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現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②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③ 사고 조사·수사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

국무조정실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개최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자율주행 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2025-09-15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①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 (현황) 생성형 인공 지능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음
- (개선1) 이에 ‘저작물 공정이용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11월)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개선2)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인공지능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임

②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현황)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음. 또한,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음
- (개선1)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
- (개선2) 또한, 판결문·공공저작물(예: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

2. 자율주행 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①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 (현황)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인공지능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음
- (개선)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

② 자율주행 실증 확대

-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선)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 →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 확대(공모)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

③ 생활·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

- (현황) 민간 전문가 등은 국내·외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음
- (개선) 앞으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

3.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 (현황)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구개발·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등을 건의하였음
- (개선)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19 시행

고객의 거래편의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환중개업의 종류에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기관 등과 이에 속하지 않는 자 간의 외국통화 매매 등을 중개하는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078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외국환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19 시행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16 시행
---------	---------------------------------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는 등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벤처기업이 영위할 수 없는 업종으로 제한하였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앞으로는 **벤처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9-17 시행 예정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원상회복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3-17 시행 예정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부당한 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9. ~2025.10.29.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전화: 044-201-7413, 팩스: 044-201-7351\)](tel:044-201-7413)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6. ~2025.10.13.
-------	------------------------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시행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조문번호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5, 팩스: 044-201-5601\)](tel:044-201-4025)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7. ~2025.10.27.
-------	----------------	-----------------------------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 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 의무자가 시세 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 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6, 팩스: 044-201-5529)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2025.10.28.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범죄자화를 방지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전화: 055-856-421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정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정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2025-09-15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025-09-15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32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2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025-09-17 발의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 효과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 (안 제18조의2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5-09-17 발의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2025-09-18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자원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는 지속가능항공유는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주목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2%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하도록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사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2025-09-18 발의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2025-09-15 발의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 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5-09-17 발의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5-09-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

2025-09-15 발의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2025-09-15 발의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2025-09-16 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신고 제도 등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셋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

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법안(서삼석의원 등 25인)

2025-09-17 발의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9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6항·제7항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폐기·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반송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폐기·반송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유자가 폐기·반송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회수·폐기·반송 명령 등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5-09-18 발의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차 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송·배전 등 발전소비 과정에서 전력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전력안보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터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지원,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금융 지원과 민간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9-18 발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2025-09-15 발의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5-09-15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5-09-17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판례는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경영상 문제점이 없는 한국법인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근로자대표 등의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및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9-18 발의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①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안 제158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등 20인)**

2025-09-16 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9-16 발의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2025-09-19 발의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증가산금이 폐지(2024.1.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증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증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증가산금은 월 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 (안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025-09-19 발의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

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9/22(월) 10:00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전체회의	9/24(수)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9/25(목) 11: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9/22(월) 09:3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9/24(수)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국방위	전체회의	9/24(수)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진영승) 인사청문회
행안위	전체회의	9/23(화)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문체위	전체회의	9/24(수) 14: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농해수위	전체회의	9/24(수)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산자위	전체회의	9/25(목) 10:3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복지위	전체회의	9/24(수) 11: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토위	전체회의	9/25(목)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2(월) 10:00	경북 SOC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V : 시리즈 세미나	구자근·강명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2(월) 15:00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	임종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23(화) 14:00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재관·김원이 의원실 등	의원회관 306호
	9/24(수) 10:30	방위산업 생태계와 수출 지원 전략 : 평화 방위기금 활용 방안	백선희·황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25(목) 11:00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	박수현·김윤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26(금) 14:00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발전과제 : 2025년 추계 학술세미나	민홍철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9/26(금) 10:00	포용금융 3.0시대	민병덕·유동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9/22(월)	「Data+」제18호(2025-18호) 발간	국회도서관	
	9/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81호(2025-18호) 발간		
	9/24(수)	「금주의 서평」제747호(2025-38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80호(2025-17호)	국회도서관	
	9/17(수)	「금주의 서평」제746호(2025-37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16(화)	러시아	러시아 북극항로 규제 동향과 한국 기업의 진출 시사점
9/16(화)	소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9/17(수)	중국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9/19(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9. 3. - 2025. 9. 16.)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